

예산총칙

2010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79,849,950	11,395,499
일반회계		255,872,000	7,676,160
특별회계		123,977,950	3,719,339
기타특별회계		123,977,950	3,719,339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065,210	32,556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155,702	34,671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0,000	300
주택사업특별회계		94,844	2,84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03,049,059	3,091,472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80,300	5,409
치수사업특별회계		501,835	15,05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300,000	9,000
기반시설특별회계		1,000	30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특별회계		17,600,000	528,0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미월 사업은 별첨 “명시미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89,845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9,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